

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

[ 심 사 보 고 ]

## 1. 심사경과

가.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: 2003. 11. 11.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11. 14.

다. 의안번호 : 제 2003 - 53호

라. 상정일자 : 2003. 11. 24.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과장 강창남)

### 가. 제안이유

-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치한 합동 묘역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서
- 묘역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,
- 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 특별법의 적용 및 운용 절차상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묘지의 안장 대상자는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와 그 배우자로 규정함(안 제3조)
- 묘지 안장·합장의 신청서류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제4조).
- 묘지의 규격은 5.58㎡(1.7평)로 봉분은 없으며, 규격과 시설은 규칙으로 정함(안 제6조)
- 역사교육관, 위패봉안소, 묘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

(안 제11조 내지 17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# 가. 역사교육관(제11조)

- 역사교육관은 413평의 대규모 건축물로서 내부에는 전시실, 시청각실, 관리사무소와 유족회 사무실을 두도록 계획되어 있음.
- 유족회 사무실을 동 시설내에 두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필요

#### 나. 거창사건 묘지관리 사업소내 시설물 설치(제14조)

- 조례안 제14조에 휴게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휴게소의 운영과 관리는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음.
- ① 공사 내역상 현재 동 시설계획이 없는데 향후 설치한다면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? 있다면 어느곳에 얼마만한 규모로 설치할 것인지? 또, 반드시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.

#### 《주요 시설 설치 내용》

시 설 명	면 적	시 설 명	면 적
묘역	2개지구 3,274평	역사교육관	1동/ 413평
위패봉안소	1동/ 98평	일주문	1동/ 11평
안내소	1동/ 29평	화장실	1동/ 20평
상징조형물	탑 18m 부조 48m 군상 2개	희생장소보존	3개지구

- ② 휴게소 운영,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제2항에 두고 있는 바, 어떤 의미에서 동 조항을 두고자 하는지 설명 필요.

#### 다. 일반 참배객 지원(제16조)

- “필요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다”라는 일반 참배객 또

는 유족 등에게 제례 절차 등을 유족회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 
 동 조례에 답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 : 기재 생략

5. 토론 요지 : 기재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

o 위령행사는 유족회에서 하고 있으므로 일반 참배객의 위령  
 행사에 유족회가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조례에 담아  
 둘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.

조 례 안	수 정 안
제16조(참배)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 지에 참배·성묘·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 다. 다만, 묘역 관리상 지장이 있 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.	제16조(참배)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 지에 참배·성묘·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. 다만, 묘 역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제한할 수 있 다.

7. 심사 결과 : 수정 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